

2011.03.28 미래정책연구실

※ 본 자료는 지난 3월 24일(목) 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방역체계의 개편

1. 소동 대응체계 강화

-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및 권역별 (중부·영남·호남)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
- 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 해당 농장 외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 실시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여 발생시 긴급 투입
 - ※ 가축질병 발생시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을 위해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역 군·경, 축협 등으로 구성(비상설 기구)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 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
-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 실시
-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2. 국경검역 강화

-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 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관련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가축질병 대응 국제 협력 강화

3.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 축산농장, 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상시관리·점검 체계 구축
 -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및 시·도(시·군) 간 경계 통과 시 소독방안 검토
- 축산농가-생산자단체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 농협중앙회·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앙-지방 방역조직과 연계
 -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방역 계획 수립·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의무화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4.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
-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하고,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지원 차별화 추진
-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 강화
 - 차단방역 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
 - 백신접종에 따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합리화

5. 신원경역 감염가속 처리 방안 강구

-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
-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 강화
-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매몰처리 관련 규정 보완 등을 통해 환경문제 최소화

6. 방역조직 체계 개편

- (중앙 방역기관)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물 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지방 방역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 강화
- (IT 기술 활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조기 구축('12년)
 -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 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예찰체계 구축

□ 예방접종 계획

1. '백신접종 경쟁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추진

- 3차접종(약 2,100만두분)은 2차접종 6개월 후 전두수 재접종
 - ※ 1,600만두분(새로 태어난 송아지·자돈), 500만두분(기 접종가축 3차 접종)
 - 다른 유형(총 7개)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
- 자가접종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 백신 접종주기 및 시기, 백신 공급방법, 접종가축 검사방법 및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등 구체화

- 3차접종전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2. 백신접종 가속에 대한 예찰검사 및 관리 강화

-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11.6월~)
 - ※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3. 백신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및 국내 백신생산 검토

-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 기능 수행
-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 추진
- 종자바이러스 개발, 백신제조기술 등을 감안 국내 백신생산 검토

□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1.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대상농가에 대해 기록관리,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계속 관리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적용하고 교육 강화
 -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개선) 모든 농가
 -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 → (확대) 모든 가금류·우제류
 - 정책자금 지원 및 매몰보상금 지원 등과 연계, 실효성 제고
-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

2.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 정비

3.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분산 설치·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 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 차단
-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 추진
-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 확대
 - ※ 재입식 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00억원 우선 배정(축사시설현대화사업)

주간농업·농촌동향	2010년 농지 전용 실적
-----------	----------------

※ 본 자료는 지난 3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0년 농지 전용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 2010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2009년(22,680ha)에 비해 17.4%(3,948ha) 감소한 **18,732ha**로 집계
 - 이는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약 22배**에 해당하며, 전국의 시·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23번째로 큰 전라북도 부안군의 전체 경지면적(18,829ha)과 비슷한 규모임.
 - 2010년의 농지전용이 2009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줄었기 때문임.
- 한편, 최근 5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해 왔고, 동기간 연평균 농지 전용면적은 2만ha 수준이며, 2010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농지전용 추이>

구분	'06	'07	'08	'09	'10
전용면적(ha)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전년대비 증감율(%)	3.6	52.1	-26.2	24.5	-17.4

주: 2007년에는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722ha 전용

- 용도별로 보면,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7,603ha,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2,766ha가 전용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10,369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55%를 차지함.

※ 공공시설 : ('06) 5,599ha → ('07) 11,961 → ('08) 8,369 → ('09) 9,427 → ('10) 7,603

※ 공업시설 : '06 1,334ha → '07 2,249 → '08 2,490 → '09 5,370 → '10 2,766

○ 반면,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9년에 비해 66%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밖에 농어업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함.

- 택지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택지로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축사와 간이저온저장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임.

※ 주거시설 : '06 3,517ha → '07 3,949ha → '08 2,424 → '09 2,632 → '10 4,378

※ 농어업용시설 : '06 2,442ha → '07 1,570 → '08 893 → '09 849 → '10 768

○ 2010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2,429ha로 전체 농지전용면적이 1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추이>

구분	'06	'07	'08	'09	'10
전체 전용면적(ha)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ha)	2,904	5,125	3,190	4,004	2,429
점유율(%)	17.9	20.8	17.5	17.7	13.0

※ 농지전용 면적·건수 및 전용용도별 면적은 부록 참고.

부록

<농지전용 면적·건수>

구분	2006	2007	2008 (A)	2009 (B)	2010 (C)	각년 대비 (%)	
						B/A	C/B
면적(ha)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25	83
논	8,159	14,380	9,977	12,867	9,843	129	76
밭	8,056	10,286	8,238	9,813	8,889	119	91
건수(건)	63,167	60,954	63,765	59,280	57,463	93	97

<전용용도별 면적>

구분	2006	2007	2008 (A)	2009 (B)	2010 (C)	대비 (%)	
						B/A	C/B
계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25	83
공공 시설 (도로·철도·항만등)	5,593	11,961	8,369	9,427	7,603	113	81
주거 시설	3,517	3,949	2,424	2,632	4,378	109	166
광·공업 시설	1,334	2,249	2,490	5,370	2,766	216	52
농어업 시설	2,442	1,570	893	849	768	95	90
기타	3,329	4,937	4,039	4,402	3,217	109	73